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226호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3-21호(2023.02.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동대문구 이문동 86-1번지 일대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협의와 관련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수취인부재·수취거부·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가. 사 업 명: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86-1 일대

다. 시 행 자: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종애)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34, 3층 (휘경동, 진성빌딩)

라. 공고기간: 2024. 10. 04. ~ 2024. 10. 18.(14일간)

마. 공고방법: 구청, 조합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바. 보상협의 방법

- 1) 협의기간: 2024년 10월 4일 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 2) 협의장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34, 3층 진성빌딩
- 3) 협의방법: 사업시행자와 당사자 간의 직접협의(협의 성립시 현금 보상)
- 4)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문의

사. 공시송달 대상 및 토지 등 내역: 붙임 참조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939) 및 이문4구역 조합사무실(02-2246-2595)로 문의바라며, 게시판에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상협의 안내문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및 토지 등 내역

연번	동명	물건지		송달받는자	
		지번	층/호	성명	영업장주소
1	이문동	83-1	1층 우	한*문이문자국(김*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93 (이문동) 1층 우 (상가)
2	이문동	83-1		이*합인테리어(김*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93 (이문동)
3	이문동	83-47	1층 안쪽	무*화미용실(임*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85-1 (이문동) 1층 안쪽
4	이문동	86-48	1층 2호	윤*희(윤*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86 (이문동) 1층 2호
5	이문동	86-117	101	라*프방역(정*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8길 5 (이문동) 101 (상가)
6	이문동	101-33	1층	셀*빨래방(김*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29 (이문동) 1층
7	이문동	101-39	1층	은*건축(유*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4 (이문동) 1층
8	이문동	109-85		동*도시가스(조*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4-1 (이문동)
9	휘경동	151-3	1층	디*인그룹대미(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53 (휘경동) 1층
10	이문동	115-64		협*공업사(이*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0 (이문동)
11	이문동	175-4		에*이모식당(김*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2길 91 (이문동)
12	이문동	115-62	1층	동*종합유리(위*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0-1 (이문동)
13	휘경동	119-28	1층	정*건강(황*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75 (휘경동) 1층
14	휘경동	148-50	1층	오*캐철가동맹(김*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5 (휘경동) 1층
15	휘경동	148-56	1층	솔*얼리(우*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1 (휘경동) 1층

		보상액	권리의 종 류
송달주소	사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93 (이문동) 1층 우 (상가)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16 113동1806호 (지행동, 송내주공아파트1단지)	수취인불명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85-1 (이문동) 1층 안쪽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86 (이문동) 1층 2호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8길 5 (이문동) 101 (상가)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429 (이문동) 1층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4 (이문동) 1층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4-1 (이문동)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53 1층 이경마트내 주차관리사무소 (휘경동)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0 (이문동)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2길 91 (이문동)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30-1 (이문동)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375 (휘경동) 1층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5 (휘경동) 1층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61 (휘경동) 1층	폐문부재	조합문의	영업권

[illegible]

[illegible]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126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구민의 제기민원이 다양화·전문화되는 현실에서 구민과 행정기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역할수행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위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 정원 조정 (안 제5조 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2127-4011, FAX: 3299-2612, E-mail: kevin567@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연월일: 2024. 9.
제 출 자: 감사담당관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구민의 제기 민원이 점차 다양화·복잡화·전문화되는 현실에서 구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해결하는 역할 수행의 필요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 정원 조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위원 정원 조정(안 제5조 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요구

다. 입법예고 : 2024. 10. 4. ~ 2024. 10. 24.(20일간 예정)

라. 첨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 3) 비용추계서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대표위원 1 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② ~ ⑥ (생략)	제5조(구성 등) ① ----- ----- 5명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관계법규 발췌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운영수당 지급
- 비용추계의 전제 :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수와 지급금액이 현 수준 유지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시비						
	○ 구비						
	소계(a)						
세출	○ 일반운영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소계(b)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 총 비용(a-b)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지방세수입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240,000

-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작성자 : 감사담당관 행정6급 배수홍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5년 기준)

- 일반운영비(48,000천원)
 - 옴부즈만 운영수당 : 150천원 × 4명 × 80회
(정기근무 53회 + 월 전체회의 12회 + 찾아가는 현장옴부즈만 운영 15회)